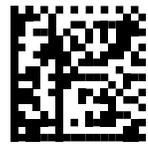




노스 캐롤라이나 주 상무부 고용 안정 실업 보험 부  
문



999999

과다지급액 결정

SUSAN DOE  
888 NORTH 10TH STREET  
SILER CITY, NC 27344

우송일: 9999 년 99 월 99

일 청구인 ID: XXXXXXXX

사기성 과다지급 결정

쟁점 번호:  
청구인 ID:  
XXXXXXXX  
우송일:  
항소 만료일:

지방 사무소:  
회의일  
신고 여부: 예/아니요

고용보장국(DES)은 귀하의 실업급여 청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귀하의 직장 과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BAI 는 <시작일>부터 <종료일>까지 기간 동안 LLC 를 보관합니다 .

귀하의 직장 과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불이행은 사기로 간주합니다. 이에 따라 귀하는 2016 년 7 월 8 일부터 2017 년 5 월 8 까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이에 덧붙여, 동 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이행은 급여의 과다지급을 초래하였습니다.

\$ <과다지급액 >	본 결정에 따른 과다지급액
\$ <이전 잔액>	이전 과다지급 잔액
\$ <상환>	본 결정 이전 상환액
\$ <과태료>	과태료 액수
\$ <OVER PAY BAL>	과다지급 잔액

**[파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 단락 추가]**

과다지급 잔액은 N.C. Gen. Stat. § 96-18(g)(2)에 따라 DES 에 상환해야 합니다. 상환은 동 국 웹사이트 [des.nc.gov](http://des.nc.gov)에서 Visa 또는 MasterCard 로 결제하거나 아래 부서에 수표나 우편환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:

**[파산에 해당할 경우 이 단락 추가]**

파산법원을 통해 실행되는 상황, 또는 귀하가 파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귀하에 의한 상환은 동 국의 웹사이트 [des.nc.gov](http://des.nc.gov)에서 Visa 또는 MasterCard 로 결제하거나 아래 부서에 수표나 우편환으로 지불해야 합니다:

노스 캐롤라이나 주 상무부 고용 안정 실업 보험 부  
문

정보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미 사기 방지에 도움을 주십시오.

NC BI 514 DFO

999999

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 
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 
Unemployment Insurance



999999

각 수표 또는 우편환에 귀하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입력한 후 아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:

NC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 
BENEFITS INTEGRITY SECTION  
POST OFFICE BOX 25903  
RALEIGH, NORTH CAROLINA 27611

귀하의 과다지급 잔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DES 와 지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귀하는 지불 계약에 대한 지원은 동 국의 급여성실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항소권: 본 결정은 상기 항소권 만료일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. 본 결정의 항소에 대한 정보는 동봉되는 팸플릿에 포함됩니다.

### 과태료

North Carolina 고용보장법 제 96 장에 따라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주장, 급여를 취득 또는 인상하기 위해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불이행에 대해서는 아래의 과태료가 귀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#### 의무 연방 과태료

N.C. Gen. Stat. § 96-18(h)에 따라 사기성 과다지급의 결정은 과다지급액의 1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.

#### 형사 소추:

N.C. Gen. Stat. § 96-18(a)(2)에 따라 각 허위진술, 허위주장, 또는 급여를 취득 또는 인상하기 위한 중대한 사실의 공개 불이행은 급여 가액이 4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중죄를 구성합니다. 본 위반행위는 벌금 및/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급여 가액이 400 달러 미만일 경우, 위반행위는 N.C. Gen. Stat. § 96-18(a)(3)에 따라 경범죄를 구성합니다.

#### North Carolina 주 고용 해지

N.C. Gen. Stat. § 143-553(a)에 따라 North Carolina 주 또는 특정 지방 교육 기관의 직원, 무급직 공무원 또는 의원은 고용 지속 조건으로 동 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. 동 국은 서면 의무 통지를 제공합니다. 합리적 기간 이후 채무가 완납되지 않거나 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, 행정 또는 사법 구제를 추진하지 않는 한 주 정부와의 고용을 해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.

### 과다지급액의 회수

N.C. Gen. Stat. § 96-18(g)(3)에 따라 동 국은 아래 절차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.

#### 세금 상계

동 국은 연방 세금 환급, 주세 환급, 복권 당첨금 또는 급여 압류를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.

#### 급여 상계

**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**  
**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**  
**Unemployment Insurance**



999999

과다지급액은 향후 귀하에 지불되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과다지급액이 변제되거나 귀하의 권리가 소진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월 급여액 중 최대 100 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**민사소송**

과다지급액은 동 국 명의를 민사소송으로 추심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 비용은 귀하에게 청구됩니다.

**재산 유치권**

통지 이후 30 일 안에 과다지급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, 동 국은 귀하가 거주하거나 재산을 보유한 카운티 법원 서기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귀하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판결은 소송사건표에 기재됩니다.

본 감사에 포함되는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주 종료일	신고 소득	고용주 신고 소득	고용주 이름 또는 사유	지불 급여	실제 지불 예정 급여	과다지급액
01/01/2001	\$0.00	\$0.00	employersName	\$0.00	\$0.00	\$0.00
합계				\$0.00	\$0.00	\$0.00

